2019년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자 : 2019. 9. 20.(금요일)

o 방　　법 : 온라인심의

o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
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응준(분과위원장)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・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안건 및 결과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・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7건(안건번호 제2019-115777호~제2019-115876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공개된 국내외 영상저작물(영화)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기생충(2019), 영화 알라딘(2019), 영화 봉오동 전투(2019), 영화 원더랜드(2019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  다만 목록 27번(제2019-115803호)의 경우는 저작물명이 영화 기생충(2019)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관련 채증자료는 영화 알라딘(2019)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작물명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 점은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- B 위원 :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화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로서,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여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C 위원 : 115777허호에서부터 115876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 권고를 가결함

2019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9. 20.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임진모

위원 박성호